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-06호

# 공 고 문

다음 장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
1. 구 역 : 일산해수욕장 수영경계선으로부터 내측 및 외측 30m 이내 해상

※ 단, 금지구역 내 레저사업장의 진·출입구역은 제외한다.

2. 기 간 : 해수욕장 개장기간

※ 단, 조선해양축제기간은 제외한다.

3. 대 상 : 모든 수상레저기구

4. 기타사항 : 주·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

5. 참고사항

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울산해양경찰서장

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-07호

# 공 고 문

다음 장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
1. 구 역 : 진하해수욕장 수영경계선으로부터 내측 및 외측 30m 이내 해상

※ 단, 금지구역내 레저사업장의 진·출입구역은 제외한다.

2. 기 간 : 해수욕장 개장기간

3. 대 상 : 모든 수상레저기구

4. 기타사항 : 주·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

5. 참고사항

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울산해양경찰서장

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-08호

# 공 고 문

다음 장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
1. 구 역 : 임랑해수욕장 수영경계선으로부터 내측 및 외측 30m 이내 해상

※ 단, 금지구역내 레저사업장의 진·출입구역은 제외한다.

2. 기 간 : 해수욕장 개장기간

3. 대 상 : 모든 수상레저기구

4. 기타사항 : 주·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

5. 참고사항

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울산해양경찰서장

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-09호

# 공 고 문

다음 장소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.

1. 구 역 : 일광해수욕장 수영경계선으로부터 내측 및 외측 30m 이내 해상

※ 단, 금지구역내 레저사업장의 진·출입구역은 제외한다.

2. 기 간 : 해수욕장 개장기간

3. 대 상 : 모든 수상레저기구

4. 기타사항 : 주·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

5. 참고사항

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울산해양경찰서장